학사경고자 관리 규정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 학칙 제 42조 및 학칙시행내규 제30조에 근거한 학사경고자의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.
- **제2조(정의)** 이 규정에서는 "학사경고 위험군"과 "학사경고자"로 분류하고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항과 같다.
 - ① "학사경고 위험군"이라 함은 학사경고를 받지는 않았으나 매 학기 평점평균 1.5이상 2.0 미만의 학업부진을 겪는 고위험군 및 학업에 충실하지 않은 학생을 말한다.
 - ② "학사경고자"라 함은 학칙시행내규 제30조(학사경고) 제1항에 의해 매 학기 평점평균이 1.5 미만인 학생을 말한다.
- 제3조(학사경고 위험군 조기 관리) ① 교무처는 매 학기 성적이 1.5이상 2.0 미만 의 학습부진을 겪는 위험군(이하 "학사경고 위험군"이라 한다)을 선별하여 소속학 과 학과장에게 전달하고 소속 학과장은 해당 학생 지도교수에게 통보한다.
 - ② 지도교수는 2주 이내에 학사경고 위험군의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결과는 해당 학과에 전달하도록 하고 해당 학과는 상담일지를 보관하며 상담에 대한 결과는 교무처에 제출하도록 한다.
 - ③ 학과장 및 지도교수는 소속학과 학사경고 위험군 중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교수학습지원센터 또는 상담취업지원센터에 연계하여 특별관리하여 지도한다.
 - 1. 대상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별도의 학습법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교수학습센터로 연계하여 지도함
 - 2. 대상 학생의 대학생활 부적응을 개선하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상담취업지원센터로 연계하여 지도함
 - ④ 학과로부터 학사경고 위험군을 이관받은 교수학습센터 및 상담취업지원센터는 학업 진작을 위해 별도의 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하며 이행결과는 교무처에 제 출하여야 한다.
- 제4조(학사경고자 관리 절차) ① 교무처는 당해학기 성적처리 마감 후 학사경고자 명단을 해당 학생 소속 학과장에게 전달하고 해당 학과장은 지도교수에게 통보한다.
 - ② 지도교수는 2주 이내에 학사경고자 특별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대상학생의 부모상담을 시행해야 할수 있으며, 상담결과에 대한 일지는 해당 학과에서 보관하며 상담에 대한 결과는 교무처에 제출하도록 한다.
 - ③ 학과장 및 지도교수는 소속학과 학사경고자를 교수학습지원센터와 상담취업지원센터에 연계하여 특별관리하여 지도한다.
 - 1. 대상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별도의 학습법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교수학습지원센터로 연계하여 지도함

- 2. 대상 학생의 전문 상담 프로그램은 상담취업지원센터로 연계하여 지도함 ④ 학과로부터 학사경고자를 이관받은 교수학습지원센터 및 상담취업지원센터는 학사경고자 특별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하며 이행결과는 교무처장에 보고해야한다.
- 제5조(학사경고자 집중 관리) ① 지도교수는 학사경고를 2회 이상 받은 학생을 대 상으로 개인 상담을 진행하여 학업증진을 유도하고, 교수학습지원센터 및 상담취 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필수로 참여하도록 지도한다.
 - 1. 대상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학습법 프로그램은 교수학습지원센터로 연계하여 지도함
 - 2. 대상 학생의 전문 상담 프로그램은 상담취업지원센터로 연계하여 지도함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